

정책 · 사업평가기능의 정립과 정책과제
(Restructuring the Policy & Program
Evaluation System and Its' Policy Agenda)

2004. 4.

국 회 예 산 정 책 처
사 업 평 가 국

정책 · 사업평가기능의 정립과 정책과제

양 지 청(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요약》

이 연구에서는 정책 · 사업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내의 사업평가국의 역할을 밝히고 그 지향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정책·사업평가기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사업평가를 하면 정책이 보인다는 관점에서 정책 · 사업평가를 논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현행 정책평가체계의 발전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평가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고찰해보아 정책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사업평가국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채택되고 집행된 뒤 행하는 부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책의 생성과 함께 행해져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청과 함께 사업평가국의 전방위 평가체계의 구축과 평가업무의 시작을 전환점으로 삼아 정책과 사업평가를 실시한다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시적인 개별과제(project)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부터, 타당성조사 방안의 개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의 개선·개발 등 수많은 이론연구를 수반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 협소한 국토조건을 가진 우리나라는 국민세금으로부터 형성된 재원을 계획적·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정책은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표현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곧 예산·세금의 효율성 극대화과 직결된다.¹⁾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정치활동은 정책에 대한 논의·처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기업, 소비자, 국민등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말 그대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에서 시작하여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성원은 없다. 그러므로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은 제안될 때부터 신중을 기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채택되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것이 ‘정책평가’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채택되어 집행되는 과정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한국의 정책평가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1961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조정실의 심

1) 김명수(2003, P5)는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정책과 사업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여러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Rossi and Freeman(1982) 등은 넓은 의미, 광의의 정책 · 사업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사분석 업무담당을 시작으로 문제점 수정을 거듭하여 1998년 4월 각 부처의 업무추진 성과와 추진의지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시 1999년에는 이를 광역자치단체에 확대·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운영상의 한계와 평가방법,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에 따라 정부는 국정평가인프라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면서 효율적 수행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고있다. 여기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이외에 정책평가기능을 추가하여 부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여하튼 평가는 시대적인 대세이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2003년 예산정책처법이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칭(2004. 3. 3)되었고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내에 독립적으로 사업평가국(program evaluation bureau;PEB)을 설치하여 정책·사업평가에 대한 상호교차 전방위평가(cross checking)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평가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고찰해보아 정책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사업평가국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징

정책평가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적 사정 등의 지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정책평가의 대상은 정책으로 시책(policy measure), 사업(program), 과제(project) 그리고 넓게는 법령(law and ordinance)이 이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

첫째, 정책평가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정책의 목표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을 평가한 후 해당 정책의 계속 시행 혹은 중단, 확대 또는 축소, 또는 수정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성을 충족시킨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정책을 수행하므로 그의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수행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한다.

셋째, 정책평가는 본질적으로 국민과 정책대상 집단의 지지 획득에 그 목적이 있다. 정책은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 제고와 평가 내용에 대한 지지를 위해 평가과정에 정책대상 집단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넷째, 정책평가는 정책형성, 구체적 사업에 대한 평가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론

2) Rossi and Freeman(1982), 노화준(196), 김명수(2003), 양지청(2002), 이윤식(2004) 등을 참조하여 정리.

의 개발이나 기존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수단이다.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공공이익 및 국민, 기업에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평가에 참여하는 주체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언론기관 등이다. 이들 주체의 소속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정책평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평가를 자체평가(self-evaluation), 이것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를 내부평가(inside-evaluation)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내부평가에 자체평가를 포함시켜 나타내기도 하고 실무에서는 그 반대로 자체평가에 내부평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는 외부평가(outside evaluation)라고 한다.

이러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에는 대체로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³⁾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정책평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정책평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하여 사정(assessment)을 통하여 정책활동에 관한 환류정보(feedback information)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비법적 책임(non-legal responsibility)을 밝히는 관리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정책활동에 대한 효율성 관리를 주 임무로 삼는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의 특징은 사후적 사정(post facto assessment)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효율성, 돈의 가치 등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면서 사전평가, 과정평가 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의 정책평가는 회고 지향적(retrospective)이다. 정책평가는 과학적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는 정책평가연구 또는 정책평가조사(policy evaluation research)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특정한 정책의 영향을 사정하는 실무적 정책평가의 수준을 포괄하며 평가방법론도 중시한다.⁴⁾

2. 정책평가의 필요성

1960~70년대에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평가연구에 관리주의적(managerialist) 방법론이 결합되면서 평가는 전 세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993년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s, GPRA)이 통과한 이후 각 국가들로 유사한 입법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수준에서 결과(또는 성과)에 기초한 평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중심의 평가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초 공공분야에서 제반활동의 예산가치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적 행정개혁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라는 두 가지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며,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

3)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 서울프레스, 1994, pp 315-335

4) 일부 정책평가차원에서 사전평가를 정책분석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평가체계상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다.

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업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제반 업무에 대한 신공공관리적 접근 경향은 정부업무평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가중된 것으로 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정부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예산지출의 정당성과 더불어 “예산가치에 대한 성과(value for money)”를 밝혀 주어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업무에 관한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Ⅲ. 정책평가의 유형과 단계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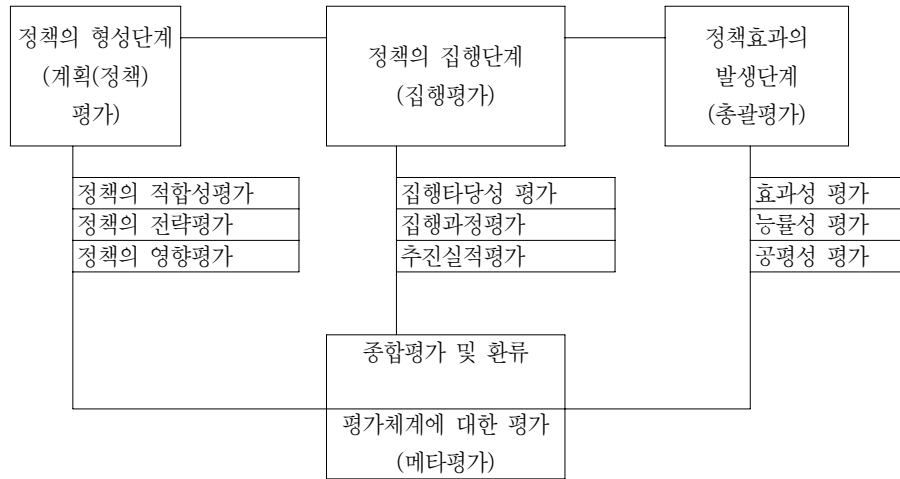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은 국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정책은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책 시행 전에 사전평가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이 검토되어 정책 입안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평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정책형성단계의 평가, 집행단계의 평가, 정책효과의 발생단계의 평가,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1. 계획의 수립단계(정책형성) : 사전평가, 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 영향평가는 정책의 방향이 국민·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정책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거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지, 정책파생효과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적절한지 등 정책의 적합성 평가, 정책의 전략평가, 정책의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정책문제의 분석 : 문제의 인식, 문제의 시급성, 파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 정책목표 분석 : 정책문제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 중요성의 원칙에 따른 목표의 설정과 목표설정의 적합성 등을 평가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정책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 등을 분석·평가(목표간의 상충)
- 정책파생효과에 대한 대책의 평가 :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 또는 부수효과를 예상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평가한다.

<그림 1> 정책의 단계별 평가내용



2. 계획의 집행단계 : 집행평가

집행평가는 정책운영의 초기나 정책이 일정기간 집행된 후 정책추진실적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여 목표의 성취나 태도변화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관찰하며, 정책의 어느 측면이 확대, 수정,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책의 기획자나 개발자들에게 정책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집행타당성 조사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앞서 계획수립 후 집행결정과정에서의 중요한 여건의 변화는 없었는지, 집행의 실효성은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일정액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부정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집행타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 집행과정평가

집행절차와 자원, 정책대상에게 정책내용이 전달되고 있는지 등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가를 점검하는데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정책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협의의 집행과정평가로서 ㉠정책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경로에 잘못이 있는지? ㉢집행에 보다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광의의 집행평가는 ㉠원래의 집행계획에서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activity) ㉡계획된 양과 질의 자원(인적, 물적)이 계획된 기간에 투입되고 있는가?(input) ㉢원래 의도한 정책대상집단에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가?(coverage) 그리고 ㉣관련된 법률이나 법규에 순응하고 있는가?(compliance)를 주로 평가한다.

3) 추진실적조사

집행과정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물리적 집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사업의 진척정도를 백분율, 또는 목표달성도로 나타내고 있다.

추진실적 분석은 개별사업의 추진과정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업을 사업부문별, 기관별, 재원별, 지역별로 유형화하여 파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투자규모와 방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3. 정책결과(효과)의 발생단계

종합평가(또는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검토하고, 정책의 파생효과, 즉 정책집행에 따른 역효과와 부수효과를 포함하여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그 평가대상과 목적에 따라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정성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는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의 여부와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는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정책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문제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능률성 평가

능률성 평가는 정책결과 나타난 사회적 효용과 정책 추진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간의 비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정책의 직접적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부작용이나 사회적 충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정책의 효과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큰가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된다.

3) 공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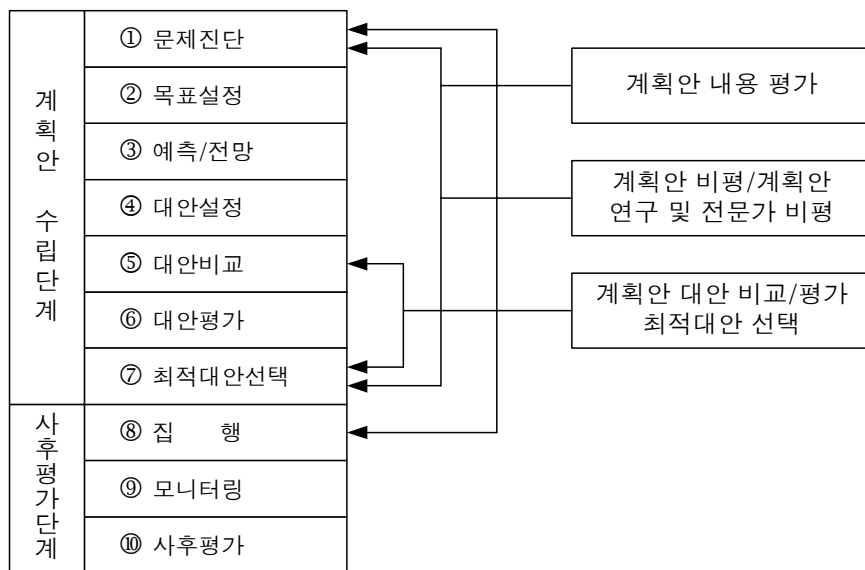
공평성 평가는 정책의 집행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간의 배분 등이 공평한지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이는 공익성이 높은 정책에서 중시되며, 공평성의 확보는 사후적 평가보다는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자의 민주적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시한다.

4.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메타평가)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평가는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수립 과정은 ①문제진단, ②목표설정, ③예측 및 전망, ④대안설계, ⑤대안비교, ⑥대안평가, ⑦최적대안선택, ⑧집행, ⑨모니터링, ⑩사후평가 등을 거치게 되는데 각 국면마다 평가가 있을 수 있고, 평가방안, 기준, 평가위계 등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는 현 평가체계가 효과적인가? 기능상 왜곡은 되어 있지 않나? 기존의 평가방안은 잘 작동하고 각 단계별(예: 집행, 모니터링, 대안비교 등)로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개별 사업 및 정책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기법, 평가유형이 적합한지 사업 및 정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2> 계획수립 과정과 평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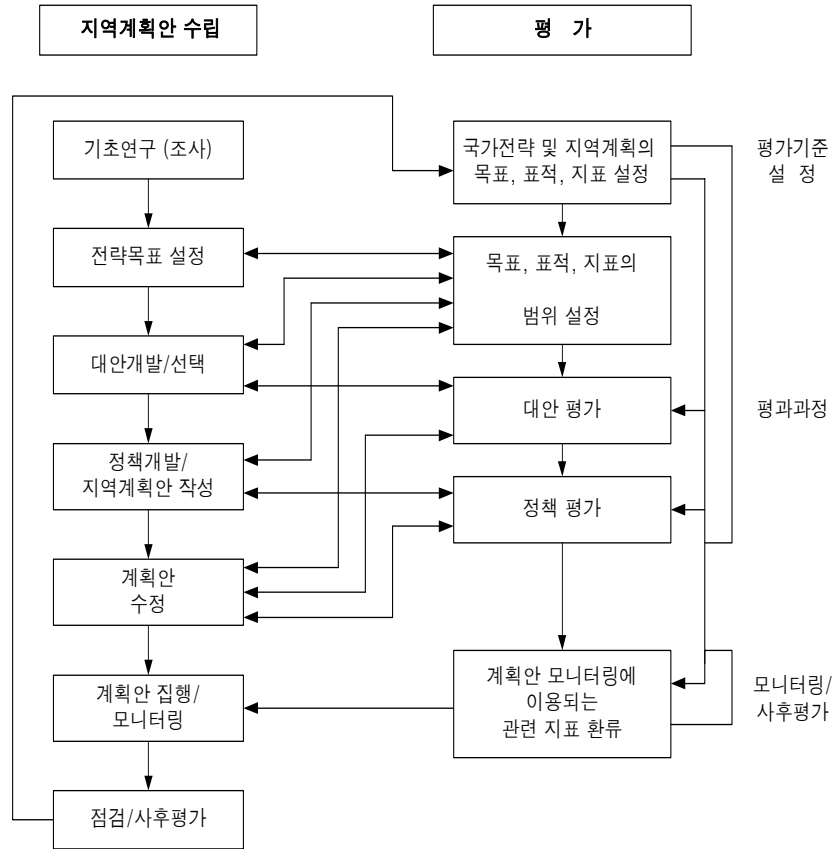


5. 정책의 수립과정과 단계별 평가내용과의 관계

아래 그림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계획수립과정과 평가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계획수립 과정은 ①문제진단, ②목표설정, ③예측 및 전망, ④대안설계, ⑤대안비교, ⑥대안평가, ⑦최적 대안선택, ⑧집행, ⑨모니터링, ⑩사후평가 등의 10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형성단계, 또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정책의 평가(협의의 계획평가)라고 할 때 이는 ⑤~⑦단계에서 주로 수행되며, 집행평가는 ⑧단계, 그리고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단계에서의 평가는 ⑨ 및 ⑩단계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정부의 투자는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귀착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공간계획차원의 평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책이 입안되고 수정되고, 집행모니터링 되며, 사후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3> 계획수립과정과 평가의 대응관계



IV. 우리나라 정책평가 체계의 변천과 현안

1. 한국 정책평가체계의 변천

한국의 정책평가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1981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하였다. 기획조정실은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분석·평가하였고 1981년 기구개편과정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지된 후에는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국(후에 심사평가국으로 개칭)으로 이관되었다. 1990년부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제23행정조정관실 내 정책평가심의관실)에 평가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각 부처의 핵심시책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별도로 도입·운용하였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와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가 이원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평가기능은 1994년 12월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심사평가제도」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평가목적 실현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국무조정실내 심사평가조정관실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어 1998년 4월에는 각 부처의 업무추진 성과와 추진의지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경쟁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유인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고, 1999년에는 이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적용하였다. 2001년 1월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와 같은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행정부 내부의 관리조정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제도운영상의 한계와 평가실시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 따라 정부는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국정평가인프라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편방안의 내용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되,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법통과되어 설립되고 공식적으로 개칭하게 됨으로써(2004. 3. 3)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내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평가국을 두고 정책·사업평가에 대한 상호교차 전방위평가(cross checking)를 실시하게 된다.⁵⁾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시행함과 동시에, 집행모니터링 평가를 시행하며, 주요 분야 중장기 재정소요분석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의 정책적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 한정된 3개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은 제한되어질 수 밖에 없지만⁶⁾, 모든 분야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전방위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부에서 낭비적 예산운영 및 타당성없는 사업을 집행하려할 때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차원에서 강력한 견제기구로 작용하여 사전적으로 바른 계획 과 집행이 유도된다.

2. 정부업무평가체계의 현황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1월에 제정·운영되면서 정부업무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업무평가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미국 의회내에 설치된 CBO 및 GA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GAO에 더 밀접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미국 의회와 미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며 프로그램과 연방정부의 지출을 연구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으로 조사와 감시기능을 부여하여 어떻게 조세를 통한 세금부담자의 돈을 연방정부가 사용하는지 연구한다. GAO는 의회에 자문을 하며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방부, DOD, HHS 등 실무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한다. GAO는 연방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연방정부의 지출을 회계감사하며, 법률적인 제안을 한다. 2004. 7. 7 공식적으로 General audit office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현대 전문적 기능을 반영하여 그 이름을 변경하였다.

6) 최병선(2004),이윤식(2004),박병식(2004), 송희준(2004) 등은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그 의의가 매우 크며 사업평가국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핵심적인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확대(실차원의 최소 5개팀)와 예산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부업무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법상 주요 평가분야는 ①중앙행정기관 평가(기관평가) ②지방자치단체 평가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체평가 ④특정과제 평가 ⑤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등을 포괄한다.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①주요정책과제 ②기관역량 ③국민만족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재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정부업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1998. 4)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도의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는 18부, 4처, 16청, 5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평가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체평가는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8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정책대상과 제 평가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최근에 감사원(7개 국)이 정책감사의 일환으로 성과감사를 위해 정책평가의 기능도 수행하고자 기존의 직무감찰, 부패방지 이외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기획예산처가 예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역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설됨에 따라 산하 사업평가국(3개 팀)이 입법부 입장에서 정책 평가를 주도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국정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 그리고 예산총괄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정책평가기능을 공유하게 됨과 동시에 입법부에서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이 독자적으로 정책평가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정책평가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정책평가체계의 문제점

1) 단편적 성과측정 위주의 평가와 사전·과정 평가 미흡

평가의 핵심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와 함께 부수적인 효과나 역기능, 장기적인 파급효과 등이 평가를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식의 경우 정책과제로 인해 야기된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단순히 정책이 의도하는 분야에서 나타난 산출을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출(output)에 치중한 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outcome) 중심적 평가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소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산출은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므로 평가하기는 쉬우나 정부활동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단기간 사업에 한정되어 있거나 반기별로 평가를 받으므로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소외되거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 자체가 없다.

또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의 경우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하므로 다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개별적 수준에서의 검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사전에 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과정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 특히 건설공사에 대해서 완공후 5년이내에 사후평가를 시작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2) 중앙집권적 업무평가구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계의 구조는 매우 단선적이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평가지침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가 중심이므로 정부기관들을 종합적이기 보다는 정책 사안별로 평가를 하여 피평가기관들을 서열화한다. 따라서 평가기관이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군림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여 지방의 실정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피평가기관들로서는 중복평가를 받게 됨으로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수월하지 않다. 게다가 평가기관 간에서 역할분담도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의 총체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평가체계이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혁신 방안’에 의하면 단순한 감사기능에서 벗어나 정책 평가기능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정책평가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정책평가의 중앙집권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무조정실과의 평가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은 정책평가의 유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편에서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해나간다.

3) 기존의 통제수단으로의 정부업무평가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은 통제지향적 측면이 강한 것도 발견된다. 특히 종합적인 업무추진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적 측면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실패의 원인에 집중하였다. 또한 평가과정 전반에 대해 홍보미숙과 방법론 결여로 측정결과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평가의 실효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합동평가도 통제지향적 성격이 강하여 평가대상시책에만 행정력이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에 코드를 맞추려는 형태가 되고 있다. 즉 합동평가의 방법론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에 대한 차별화과정이 없어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합동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지방행정의 운영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중앙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다. 그 동안 평가업무체계가 통제 지향적이었던 이유는 행정내부의 필요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부압력에 의한 개혁이다보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통제위주의 평가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평가업무체계는 정책집행활동을 포함한 정부업무활동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국무총리의 업무조정·총괄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평가 활용체계 미흡

정부업무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책임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만 하고 활용이 되지 않아 평가를 대비한 준비업무만 가중시킬 뿐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실정이다. 현행 중앙정부의 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을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평정하여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는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는 단순히 부처별 우선순위를 배열하는 데 그 역할이 그치고 있어 평가결과의 업무에 대한 환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무총리에 의해 시정요구와 해당부처의 시정조치보고가 있지만 평가결과 활용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무총리가 예산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평가기본법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평가결과와 기획이나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앞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이 사업평가와 더불어 사업이 연계되고 합쳐지면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일면 정책평가도 관여하게 될 것이므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낭비적 요소가 제거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4. 새로운 정책평가체계 구축방향과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과제

1) 새로운 정책평가체계 구축방향

앞에서 언급했던 정책평가체계의 개선과제와 함께 평가기관 간의 관계를 고려한 정부의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체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어야 바람직하다. 즉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 위계를 확립한 후 그리고 평가항목, 기준 등에 대한 정립이 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과의 역할 분담까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입법부 차원의 전방위 평가체계 역할이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감사원은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정부의 평가활동에 대한 부정기적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단, 중요 국책과제나 대통령 관심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국무조정실 평가는 행정기관의 상위평가로서 중앙부처의 자체평가를 부정기적으로 상위평가하면서 정책집행평가를 강화하여 국무총리의 국정 총괄 및 조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중앙부처는 기존의 자체평가 기능강화를 위하여 평가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국무조정실의 평가에 관한 기본지침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모형을 개발·적용하며, 부

정기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행자부의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공동평가모형을 제시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보완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부정기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을 주민에 대한 책임성, 내부운영의 효율성에 둔다면 현행 합동평가제도는 완전히 그 모습을 달리해야 한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정기적인 상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평가역량이 결여되어 자체평가 실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2)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계 내에서 국회의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이 행정부의 정책평가활동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⁷⁾

첫째, 조직의 확충이 요구된다. 행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평가활동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의해 대대적으로 전개되므로 행정부의 정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활동은 물론 정책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기관들의 정책평가 활동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사업평가국의 정책평가활동은 더욱 크게 요구되므로 대폭적인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위의 조직확충과 동시에 평가예산의 증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사업은 현행의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의 정책점검 수준으로 그칠 수 없는 상황이고 행정부 정책평가기관들의 경우 기존의 점검위주의 평가활동을 심화시켜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해서는 내부인력을 통한 자체평가 이외에 외부 전문가 pool을 적극활용하는 것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평가국 조직의 확충이나 정책평가 예산의 증액은 결국 정책평가 전문성의 확보와도 직결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의 행정부 정책평가는 정책평가 자체에 대한 이해도 결여와 비전문가의 정책평가활동관여 증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평가국의 정책평가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데 정책평가는 사실상 정책평가방법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평가정보관리의 시스템화가 시급하다. 정책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정책평가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사업평가국 자체의 평가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국정 감사 및 조사활동에 수시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평가결과의 외부 활용을 촉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의

7) 이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내부 세미나 및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다. 물론 여기에 구체적 사항이 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평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국의 정책평가결과가 외부로 공개되어야 한다. 정책평가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홍보도 강화하고 국내외 세미나 및 정책학술토론회도 개최하여야 한다. 국제 평가기관과의 교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행정부 내 정책평가활동이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정책평가의 차별화에 힘써야 한다. 행정부의 정책평가는 주로 1년 단위이므로 심도 있는 정책평가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부 평가기관들의 정책평가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책평가 전문 인력으로 출발한 사업평가국의 정책평가는 전문적인 정책평가를 주로 함으로써 정책평가정보의 비교우위를 점해야 한다.

V.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및 기능정립방향

1. 예산정책처의 기능

행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 예산심의를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사전 예산 검토를 통한 지원을 담당하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 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사업평가국의 역할

사업평가국은 국회 차원의 사전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을 토대로 신규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계속사업의 연차별 실적 및 집행을 평가하는 등 사업의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규 및 계속사업의 사후평가도 담당하는데,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는 물론 사업으로 인한 효과 및 효율성 검토, 분석 등을 통해 정부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유사사업의 예산심의 및 사업평가에 피드백도 사업평가국의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 개의 단위 과제(project)가 모여서 사업(program)이 형성되고 다시 정책으로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사전,사후, 과정평가 등 전방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3.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와의 관계설정방향

감사원의 감사방향이 직무감찰, 공무원비리 척결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일부 정책감사도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으로 사업평가국은 입법부 차원에서 cross checking을 강화하면서 독자적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다.⁸⁾ 사업평가국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예산통제 및 국회 사업예산편성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견제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중심의 선심성 개발 사업비의 증액 등에 대응하고 사업예산심의에 필요한 분석,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심성 예산편성 행태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국가예산의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

8)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임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 크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통제(controlling) 역할 이외에 「조언자」, 「컨설턴트」, 「연구자」 역할 등이 중요하다고 지원(supporting)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지만 국가마다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판사」역할에 치우쳐 있어 통제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비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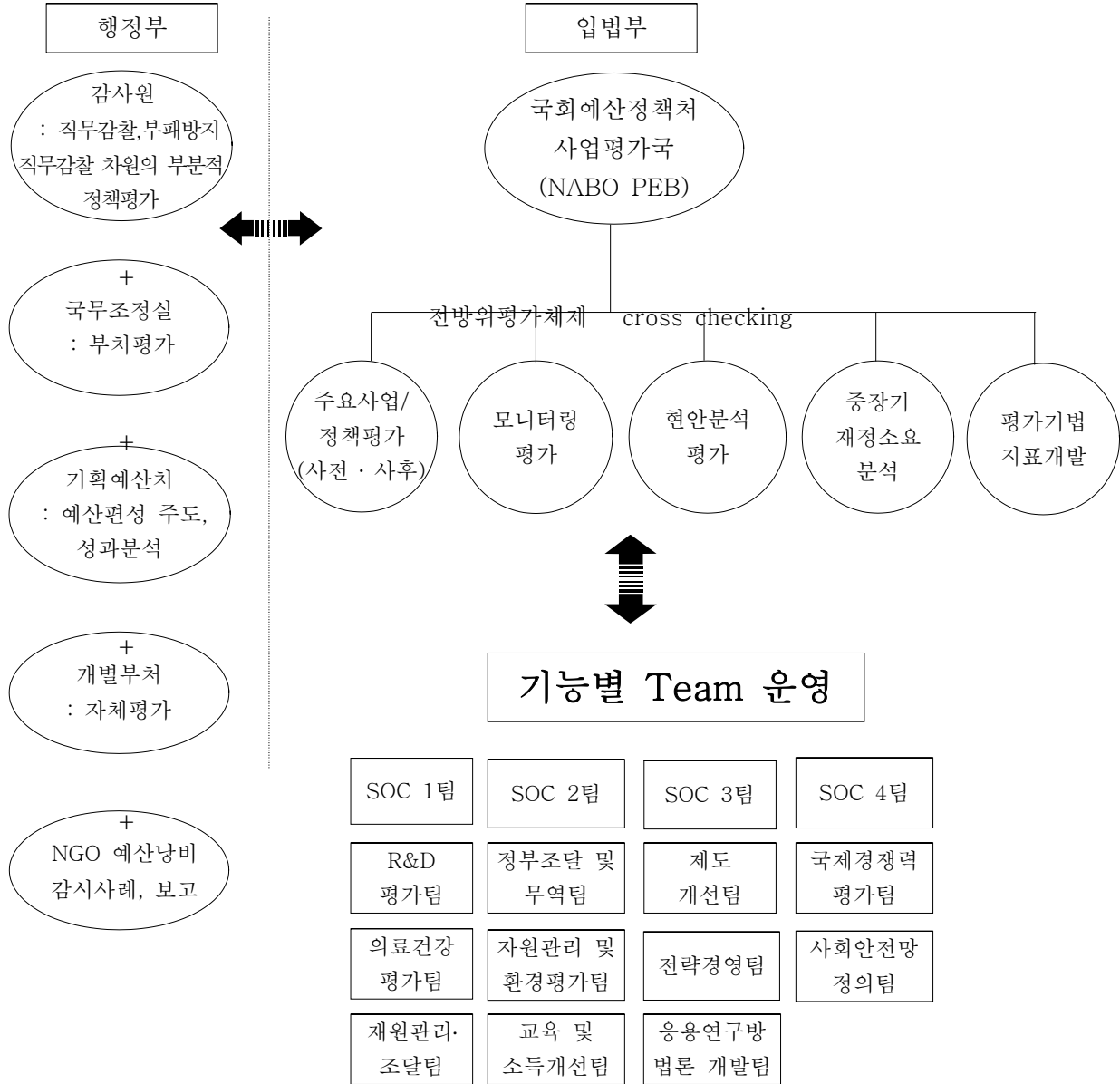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요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평가 및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정보를 공급하여 국회의 대 행정부 정책감사의 기능을 실질화하도록 하는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원 자체의 정책감사 결과를 활용, 보완하는 의미에서 정책평가 및 중복 평가의 기능을 사업평가국 자체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평가국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의 사업 평가자체에 대한 대응조직으로 이들 기관의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쟁점이 되는 평가기준 및 분석항목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한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과 메타평가기능도 수행한다. 정부예산을 소요하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사업평가국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평가국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평가국의 향후업무를 의욕적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정책평가, 사업평가 업무를 추진해가고, 속도를 내기위해서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예산의 확보를 통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관리 하는 것도 효율적 방법이다. 현재 관장하는 업무 범위를 소수의 인력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전문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업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과의 평가관련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사업평가국 기능강화 계획의 마련

사업평가국은 실질적 사업의 효과 및 모니터링,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많은 전문 인력이 분야별로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정보의 활용도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광범위하다. 향후 예산정책처의 핵심역할은 사업 분석 및 평가 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평가국의 역할은 실질적인 국회의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사업평가국의 기능강화계획은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4> 우리나라 평가체제와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평가기능



- SOC 1팀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SOC
- SOC 2팀 : 수자원, 댐, 통신, 전력에너지 관련 SOC
- SOC 3팀 : 도시철도, 지하철, 경전철, 상하수도, 환경폐기물시설 등 도시인프라
- SOC 4팀 : IT 산업, 정보화, GIS, ITS

VI.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정책·사업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내의 사업평가국의 역할을 밝히고 그 지향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정책·사업평가기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현행 정책평가체계의 발전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첫째, 단편적 성과측정 위주의 평가와 사전·과정평가 미흡 둘째, 중앙집권적 업무평가구조 셋째, 통제수단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 넷째, 평가 활용체계 미흡 등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바람직한 정책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올바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조직의 확충, 정책평가 전문성의 확충 등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파악하기도 하나 다양한 단위사업이 연결되면 정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전, 과정 중간 및 사후 평가는 동일하게 중요하다. 호주나 캐나다 등은 이 세 가지 평가를 다 취급하나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후 평가는 중요시 하지 않았다. 여하튼 국가별로 중점을 두는 평가가 있으며, 평가기관, 구조 및 체계도 다양하지만 그 본질적인 흐름은 평가가 지속적으로 기법이 다양화되고 발전하면서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채택되고 집행된 뒤 행하는 부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책의 생성과 함께 행해져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앞서 주장한 정책평가의 중요성과 지향방향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청과 함께 사업평가국의 전방위 평가체계의 구축과 평가업무의 시작을 전환점으로 삼아 정책과 사업평가를 실시한다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시적인 개별과제(project)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부터, 타당성조사 방안의 개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의 개선·개발 등 수많은 이론연구를 수반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고 부실하고 비체계적인 계획 및 추진 전략이 있다면 평가하여 시정시키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1984). 현대재정학, 박영사
김명수. (1998).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과 방향. 「한국행정연구」, 7(3) : 5-14.
김명수. (2003).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김태운. (1998). 성과감사의 운영방향과 원칙. 「한국행정학보」, 32(1) : 97-112.
김홍률. (1998). 신공공관리 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7(3) : 62-80.
노화준. (1986). 정책평가론, 법문사
노화준. (2000).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이슈와 정책평가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정책분석 평가학회보」. 10(2).

- 박병식. (2002).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1).
- 양지청. (2002).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론, 청양출판사
- 양지청 외. (2002). 국토계획 평가체계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 양지청. (2003). 치수사업의 성과평가 및 피해억제효과 추정, 기획예산처
- 이계식·황성현. (1998).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윤식. (2002). 우리나라 정부의 감사와 분석·평가 기능의 관계.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2(4).
- (2004), “우리나라 정책평가방법의 현안과 평가설계접근법의 논리,”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pp.76-106.
- Barzelay, M. (1996). "Performance auditing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Changing roles and strategies of central audit institutions." In OECD. *Performance Auditing and the Modernization of Government*.
- Bourn, J. Sir. (2000). Improving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Government Auditing*, October edition, pp. 1-8.
- Davis, D. F. (1990). Do you want a performance audit or a program evalu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1) : 35-41.
- Rossi, Peter and Howard Freeman. (1982). *Evaluation : A System Approach*, 2nd ed.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p.20
- Segsworth, R.V. (2002). "Evalu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wo Perspectives on the Canadian Experience," in Furubo, Jan-Eric, Ray C. Rist, and R. Sandahl (eds.).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 175-190.
- Thordarsson, S. (2000). Auditing the auditor: A peer review of the Icelandic National Audit Office, October edition, pp. 10-13.
- Turner, David and Sally Washington. (2002). "Evaluation in the New Zealand Public Management System," in Furubo, Jan-Eric, Ray C. Rist, and R. Sandahl (eds.).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 357-374.
- U.S. GAO. (1999).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performance auditing standards: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performance auditing based on INTOSAI's auditing standards and practical experience*.
- Vedung, Evert. (199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www.intosai.org

www.gao.gov